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6311(본소), 2022나5632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이래경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강승호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1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가단5140787(본소),
2021가단5209082(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8.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로부터 666,10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는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잔금인 666,106,000원”을 “잔금인 666,106,000원(매매대금 962,340,000원 - 계약금 96,234,000원 - 중도금 200,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김연화, 판사 주진암